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행약자를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

(최재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785
----------	------

발의연월일 : 2026. 1. 27.

발의의원 : 최재규 의원,

전홍배 의원, 서도원 의원

1. 제안이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보행약자가 달성군에 소재한 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행약자의 생활편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및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2조~제3조)

나. 경사로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6조)

다.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붙임)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행약자를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행약자가 공중이용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행약자”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2. “경사로”란 보행약자가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통로나 구조물로서 주출입구 또는 출입문의 높이 차이 제거를 위한 것을 말한다.
3. “시설주”란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시설에 대한 관리 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4. “공중이용시설”이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6조에 따라 보행약자의 접근권 향상을 위해 경사로 설치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경사로 설치 지원 등)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주의 동의를 얻어 직접 경사로를 설치하거나 시설주의 신청에 따라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닌 공중이용시설로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설치비용의 지급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지원의 결정) ① 경사로 설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군수는 경사로의 설치 필요성, 적합성 및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6조(경사로의 설치) 경사로의 유효폭, 기울기, 바닥 재질 및 마감 등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운영) 군수는 효율적인 경사로 설치 지원을 위하여 관련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2024. 12. 20., 일부개정, 2025. 12. 21. 시행)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편의시설”이란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3. “시설주”(施設主)란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 대상시설에 대한 관리 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4. “시설주관기관”이란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지도하고 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교육감을 말한다.
6.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 시설 및 그 부대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과 시설을 말한다.

제4조(접근권) 장애인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대상시설)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원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3. 공동주택

4. 통신시설

5. 그 밖에 장애인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

제8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편의시설의 구조와 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편의시설의 종류별 안내 내용과 안내 표시 디자인 기준을 함께 정하여야 한다.

제13조(설치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편의시설 설치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지원과 기술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2025. 12. 30., 타법개정, 2026. 1. 2. 시행)

제2조(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정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 과 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건축물 중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공장, 자동차관련시설, 교정시설, 방송통신시설, 묘지 관련 시설, 관광 휴게시설 및 장례식장을 말한다.

제4조(편의시설의 종류)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및 그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2025. 12. 17., 일부개정, 2025. 12. 21.시행)

제2조(편의시설의 세부기준) 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편의시설에 관한 신제품의 개발·신기술의 도입 기타 장애인등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시험적용을 할 필요가 있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부기준에 대한 특례 또는 세부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행약자를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경사로 설치 지원 등(제4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3. 미첨부 사유

- 현재 시행 중인 장애인 편의증진 사업(경사로 설치 지원)의 3년 평균 사업비('22, '24, '25)는 30,144천원 정도로 연평균 1억원 미만의 사업비가 예상됨.
- 또한 지원계획 수립 시 경사로 설치 물량과 단가를 구체화할 수 있어 현시점에서 추계가 곤란함.

작 성 자

소 속 및 직 위

달 성 군 의 회 의 원

성 명 (연 락 처)

최 재 규 (☎ 2053)